

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
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5. 11.

社會建設委員會
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99호로 2020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
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
공공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기능 시설 조항 신설
(안 제2조의2)
- 나.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갱신 1회 한정
(안 제4조제3항)
- 다.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규정 정비(안 제6조제2항)
- 라.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, 주요기능 신설(별표 1)
- 마.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 등을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1. 16. ~ 2. 5.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2조의2 및 별표1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주요기능을 규정
 -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토록 규정
 - 안 제6조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 계약기간 갱신 제한을 통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